

2024년 한국간호과학회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해설지



본 모의고사의 저작권은 한국간호과학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영리적 사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대학생 학습역량평가 모의고사 5회차 3교시 정답

1	④	2	⑤	3	②	4	③	5	③	6	④	7	⑤	8	⑤	9	②	10	⑤
11	①	12	④	13	④	14	②	15	④	16	②	17	②	18	②	19	④	20	②
21	③	22	③	23	④	24	③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①	30	③
31	⑤	32	②	33	①	34	②	35	②	36	①	37	②	38	②	39	③	40	③
41	③	42	③	43	④	44	①	45	②	46	⑤	47	②	48	①	49	③	50	④
51	④	52	①	53	④	54	①	55	⑤	56	①	57	①	58	④	59	④	60	①
61	④	62	②	63	⑤	64	⑤	65	⑤	66	②	67	⑤	68	②	69	①	70	②
71	③	72	③	73	②	74	①	75	⑤	76	①	77	③	78	②	79	①	80	④
81	④	82	④	83	②	84	①	85	③										

3교시: 간호관리학(1~35번) 해설

문1. [정답] ④

국제간호협의회(ICN)는 1899년 펜위크가 창설한 간호직과 간호사를 대변하는 국제적인 공식 기구로, 간호실무의 표준화와 간호수준의 향상, 간호법 및 윤리규정을 통한 전문직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간호사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향상, 간호사업의 국제적 통계 및 정보관리, 국제적인 정치, 경제, 의료 및 보건단체들과의 교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을 위한 연구 및 상호협조를 하며, 국가단위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고 전 인류의 건강과 인권 옹호에 앞장 서는 등의 기능을 한다.

답지에서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이다.

문2. [정답] ⑤

- ① 1907년 대한의원에서 최초의 관립간호교육이 시작되었다.
- ② 1953년 고등간호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로 개칭되었다.
- ③ 1962년 간호고등기술학교가 간호학교로 개편되었다.
- ④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고등기술학교의 완전폐지를 결정하였다.
- ⑤ 1978년 간호학의 발전과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세대학교에 박사학위과정인 간호학과가 개설되었다.

문3. [정답] ②

생명윤리학은 과학기술과 인간가치의 연관을 바탕으로, 그 윤리를 묻는 학문분야이다. 간호윤리학은 간호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와 판단에 대한 학문이며, 광범위한 과학과 생명의 경계를 넘어서는 생명공학의 이슈를 다루는 생명윤리학에 비해 범위가 제한적이다.

문4. [정답] ③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전동의는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대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5. [정답] ③

정직의 규칙은 간호사가 환자나 동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문6. [정답] ④

베너는 간호전문직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 경험이 중요하다고 믿었으며, 간호사가 전문기술이 부족한 초보자로부터 고도의 전문기술을 지닌 전문가로 발전하는 사회화 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숙련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며, 대상자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간호의 우선순위를 쉽게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증진시키며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둔다. 이 시기의 간호사는 간호업무 단위에서 리더일 확률이 높고,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다. 베너에 따르면 3~5년의 실무경험을 가진 간호사가 이 단계에 속하며, 2014년 병원간호사회 연구에 따르면 5~7년차 간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7. [정답] ⑤

해당 문제는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간호과오에 해당한다. 간호과오는 간호행위를 수행할 때 평균 수준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해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는 법적 책임이다.

문8. [정답] ⑤

- 투입에는 자료, 인력(간호사 수, 간호사의 기술, 경험, 태도, 교육 및 훈련, 환자중증도 등), 물자(장비, 공급품, 기술), 자금, 정보, 시간 등이 포함된다.
 - 전환(변환)과정은 관리과정(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과 관리지원기능(의사결정, 의사소통, 동기부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 산출은 간호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간호의 질평가, 간호시간(직접·간접간호시간), 재원일수, 환자 만족, 간호사 만족 등이 포함된다.
- ① 피드백 - 산출결과에 따라 투입과 변환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피드백을 의미함
 - ② 재원일수 - 산출요소
 - ③ 의사결정 - 변환과정
 - ④ 환자 만족도 - 산출요소
 - ⑤ 물리적 환경 - 투입요소

문9. [정답] ②

카츠(Katz)는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관리 기술을 개념적 기술, 인간적 기술, 실무적 기술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인간적 기술은 관리자가 구성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으로, 모든 계층의 관리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관리자가 조직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적인 팀을 구축하는 능력은 인간적 기술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문10. [정답] ⑤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적절한 기구와 장비를 사용하여 업무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시간 관리 등을 통해 직무의 표준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별 지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성과급제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기대이론은 동기부여이론에 해당한다.

문11. [정답] ①

탄력성의 원칙: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하부 집행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문12. [정답] ④

간호상황에서 목표관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부서별·개인별 목표가 기업의 목표와 일치한다.
- 목표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과 참여의욕이 증진된다.
- 참여와 토론을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문13. [정답] ④

진료비지불제도는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는 진단군(DRG)에 대해 수가 결정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설명이다.

문14. [정답] ②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은 마케팅믹스에 해당하며, 유통은 물리적 접근성, 정보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간호서비스 마케팅 전략이다.

문15. [정답] ④

비공식조직은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직으로, 조직 내 공식적인 조직과는 차이가 있다. 비공식조직은 감정적인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의사소통은 공식적 의사소통 경로와 관계없는 전달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점은 조직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구성원 간에 서로를 지지해주며,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를 채워줌으로써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것 등이 있다.

문 16. [정답] ②

직무분석은 직무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직무에 어떤 사람(능력과 경험 등)이 적합한지 알아내는 과정으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다.

문 17. [정답] ②

모듈방법은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팀을 이루어 일하는 것으로, 팀간호보다는 작은 구역을 맡아 수행하는 간호전달 체계이다. 전문직 간호사와 비전문직 보조인력이 팀을 이루어 간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팀간호방법과 유사하며,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간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일차간호방법과 유사하다.

문 18. [정답] ②

해당 사례는 공학기술적 전략에 대한 예시이다. 공학기술적 전략은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병실구조를 바꾸어 간호사의 직접간호시간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문 19. [정답] ④

- ① 고정근무변: 개인의 생활에 가장 알맞은 근무변을 선택하여 근무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자기근무 일정표: 간호사와 동료들이 협력하여 직접 근무일정표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 ③ 주기적 근무일정표: 일정기간 동안 작성된 근무일정에 따라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 ④ 집권적 근무일정표: 중앙간호부서에 있는 인력관리자가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각 간호단위에 배치되는 간호직원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⑤ 분권적 근무일정표: 각 일선관리자가 자신의 간호단위에 배당된 간호직원을 자신의 지식과 주관에 따라 근무일정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문 20. [정답] ②

- ① 서열법: 피평정자를 최고에서 최저까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 ② 강제배분법: 각 평정등급에 분포될 피평정자의 비율을 사전에 인위적으로 정하고 배분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최상 10%, 상 20%, 중 40%, 하 20%, 최하 10%로 하여 정상분포곡선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③ 중요사건기록법: 평가자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피평가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행동을 발생 즉시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도표식 평정척도법: 각 평정요소마다 강약도의 등급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척도를 도식하여 평정자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 ⑤ 체크리스트 평정척도법: 피평정자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업무수행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에 유무 또는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문 21. [정답] ③

임금은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외적 보상으로, 각 외적 보상이 갖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급: 기본 근무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액수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후생복지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 ② 연공급: 근속연수, 학력, 면허증, 연령과 같은 외적 기준에 따른 기본급 체계로, 업무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다.
- ③ 직무급: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상대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기본급 체계로, 동일한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각 직무 간의 공정한 임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 ④ 성과급: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체계로, 개인의 성과에 따라 임금액이 달라진다.
- ⑤ 직능급: 연공급과 직무급을 절충한 방식으로, 직무의 특성과 직무수행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하며, 많은 조직에서 임금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문 22. [정답] ③

간호사 이직은 관리자의 노력에 의해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이직과 관리자의 노력만으로는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어려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 및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족, 업무부담, 가정에 대한 책임, 자기발전의 기회 부족, 직장 내 인간관계, 간호업무에 대한 자율성 인식 부족, 승진 기회 부족 등은 자발적 이직의 원인으로, 이러한 자발적 이직은 관리자의 노력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 ①, ② 결근율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이다.
- ③ 이직률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 중 하나이다.
- ④ 신규간호사는 특별히 더 격려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 ⑤ 간호사의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간호사 이직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문23. [정답] ④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교환, 즉 거래를 리더십의 근원으로 본다. 구성원이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여 조직에 기여하면, 조직은 구성원에게 물질적·정신적 대가를 지불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리더십을 말한다.

문24. [정답] ③

기대 이론에 따르면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업무를 맡겨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업무의 수행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에게는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구성원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보상의 유형은 구성원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시켜 그 유의성을 높여야 한다.

① 성취동기 이론, ② 공정성 이론, ④ ERG 이론, ⑤ 목표설정 이론의 동기부여 전략이다.

문25. [정답] ③

①, ④는 소극적(비주장적) 표현, ②, ⑤는 공격적 표현이다.

문26. [정답] ③

- ① 형성기(forming stage): 일명 탐색기라고도 불리며, 많은 것이 생소하고 불명확한 시기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히 공유되지 못하며, 팀 구성원 간의 관계수준도 높지 않다.
- ② 갈등기(storming stage): 일명 혼돈기라고도 불리며, 팀이 진정한 팀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본격화되면서 각자의 생각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③ 규범기(norming stage): 보기는 규범기에 관한 설명이다.
- ④ 성취기(performing stage): 팀 구성원은 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팀 구성원 간의 소통이 매우 활발해지며,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강해진다.
- ⑤ 해체기(adjourning stage): 팀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팀이 해체되는 시기이다. 앞의 4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팀 구성원의 유대가 강화되며, 인간관계는 해체되지 않는다.

문27. [정답] ⑤

해당 상황의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주로 업무 부하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재설계가 필요하다. 직무 재설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문28. [정답] ③

총체적 질 관리(TQM)는 지속적으로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①, ②, ④, ⑤는 전통적 질 관리(QA)에 대한 설명이다.

문29. [정답] ①

의료기관인증기준 중 환자진료체계에 포함되는 기준은 통증관리, 욕창관리, 입원환자 치료계획,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이다. 질 향상 활동, 위험관리체계, 환경관리, 감염관리는 조직관리체계이다.

문30. [정답] ③

근본원인분석은 적신호사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의 요인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고 시스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근본원인분석은 “왜”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해당 사례에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근본원인분석은 가능한 사건 발생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모든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업무 프로세스상 발생 가능한 오류를 전향적으로 조사하는 구조화된 접근법은 오류유형과 영향분석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문31. [정답] ⑤

간호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환자안전전략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하며, 비난과 처벌의 두려움 없이 보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 구두보고를 한 후 서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32. [정답] ②

병원에서 실시되는 환자 확인 과정에서 병실 호수나 위치는 환자의 신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요 확인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환자 확인 시에는 항상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와 같이 구체적인 개인적인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문33. [정답] ①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지정된 시기에 약국에 반납하나, 혼합 조제된 항암제와 고위험 약물은 즉시 폐기한다. 비품약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교환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약물은 다른 약물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경고용 라벨을 부착한다.

문34. [정답] ②

홍역은 사람 간에 공기전파가 가능하므로 표준주의와 공기전파주의를 적용한다. 의료종사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의 이동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문35. [정답] ②

환자중증도 분류는 환자 상태에 따른 간호요구와 간호제공시간을 측정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간호단위별 및 근무조별 필요인원을 산출하여 적정 간호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3교시: 기본간호학(36~65번) 해설

문36. [정답] ①

- ① 액와의 중앙은 외기를 차단하여 정확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이다.
- ② 액와체온 측정시간은 전자체온계로 측정할 경우 1분 내외이다. 체온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③ 액와에 땀이 있는 경우,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마른 수건으로 살짝 두드려 닦아준다.
- ④ 측정 전과 후에 체온계는 알코올솜으로 닦아 소독한다.
- ⑤ 액와부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바로누운자세나 앉은자세를 취하게 한다.

문37. [정답] ②

- ① 금기가 아닌 경우, 하루 2L 정도의 충분한 수분섭취는 분비물을 묽게 하여 분비물 제거를 돕는다.
- ② 충분한 수분섭취를 통해 기도 분비물이 묽어지면 가래 배출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 ③ 호흡보조근 사용과 갈비사이근(늑간근) 퇴축은 비효율적 환기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심호흡을 통해 산소화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 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면 이뇨와 탈수를 유발하여 가래 제거에 비효율적이다.

문38. [정답] ②

- ① 질소균형은 $-1 \sim +1$ 이 정상범위이다.
- ② 혈청 알부민은 $3.5 \sim 5.0 \text{g/dL}$ 이 정상범위이다.
- ③ 체질량지수는 $18.5 \sim 23 \text{kg/m}^2$ 이 정상범위이다.
- ④ 적혈구용적률(hematocrit)은 $40 \sim 50\%$ 가 정상범위이다.
- ⑤ 혈청 철결합글로불린은 200mg/dL 이상이 정상범위이다.

문39. [정답] ③

- ① 저열량식은 체중감소를 위한 식이다. 화상과 결핵 대상자는 절대적으로 많은 열량과 영양이 필요하다.
- ② 저잔여식은 섬유질과 젓당을 제한한 식이다. 대장의 잔류물 양을 줄이기 위해 장관의 외과수술 전에 처방되며, 급성 설사와 국소적 장염, 대장염의 경우에 처방되므로, 당뇨와 비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저염식은 염분을 제한하는 식으로, 고혈압과 신장병, 임신 고혈압, 부종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④ 지방제한식은 고지혈증과 흡수불량증의 치료식이다. 간성혼수와 통풍은 단백질을 제한해야 한다.
- ⑤ 고섬유질식은 식이성 섬유질을 늘리는 것으로, 과민대장증후군과 이완성 변비 대상자에게 처방된다. 급성 결주머니염(계실염)에는 저잔여식이 적절하다.

문40. [정답] ③

시각장애와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 보조법

- 식사 전 손을 씻고 구강위생을 하도록 한다.
- 대상자는 가능한 한 침대나 의자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 삼킴과 소화증진을 위해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거나 앉은자세를 취하게 한다.
- 식판이 놓이는 침상 위 타자는 청결하게 유지한다.
- 각 식판의 대상자 성명, 식이유형, 조리완성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가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 식욕증진을 위해 원하는 음식을 먼저 먹도록 해주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배치된 음식을 시계방향으로 설명한다.
- 대상자가 식사를 끝낸 후에는 섭취한 음식의 양과 종류, 섭취한 수분의 양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 대상자가 특별식을 섭취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섭취한 음식의 양, 통증 정도, 피로, 구역 등을 기록한다.
-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도 기록한다. 이때는 식사를 재계획하거나 더 적은 양을 제공하거나 더 자주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 편마비가 없는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 식사를 거부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력 저하 대상자는 잡기가 쉬운 큰 손잡이가 달린 기구를 사용하면 보다 독립적으로 식사가 가능하다.

문41. [정답] ③

- ①, ② 대상자의 체위는 음식물의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 앉은자세나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 ③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주사기로 위내용물을 흡인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주입한다.
- ④ 간헐적 또는 지속적 영양주입 방법에 따라 위창넙(위루관) 부위의 $7 \sim 15 \text{cm}$ 높이에서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들어가도록 한다.
- ⑤ 위창넙관(위루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로 위창넙관(위루관)에 30mL 의 물을 주입하며, 약물을 투여하기 전후에도 위창넙관(위루관)을 통해 약 30mL 의 물을 주입한다.

문42. [정답] ③

- ① 펄뇨: 하루 소변량이 500mL 미만 또는 시간당 소변량이 30mL 미만인 경우이다.
- ② 빈뇨: 잦은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이며, 섭취량이 증가하면 배뇨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 ③ 요정체: 방광을 비우는 데 문제가 생겨 소변이 정체되고 방광이 과도하게 팽창되는 경우이다. 요정체가 있으면 소변이 넘쳐 흐르거나 요실금이 생기며, 소변량이 25~50mL 정도로 소량씩 자주 보게 된다. 급성 요정체는 수술 후 가장 흔한 합병증이다.
- ④ 배뇨통: 배뇨통 혹은 배뇨장애는 배뇨 시 통증을 느끼거나 배뇨가 힘든 경우를 말한다. 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거나, 소변을 보는 동안이나 이후에 화끈거림을 느끼며, 심할 경우에는 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작열감이 있다.
- ⑤ 요로감염: 요도를 통해 유입된 미생물이 세균뇨를 비롯해 방광염과 신장염 등을 초래한다. 요로의 염증이 발생하면 배뇨시 통증과 작열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문43. [정답] ④

- 해당 문제는 대변잠혈검사에 대한 내용이다.
- ① 치핵이나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② 검사 7일 전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다.
 - ③ 검사 3일 전부터 육류와 붉은 고기의 섭취를 금한다.
 - ④ 검사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전에 소변을 본다.
 - ⑤ 검사 3일 전부터 생야채나 과일 등의 음식물 섭취를 금한다.

문44. [정답] ①

- 소변정체(요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배뇨양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 ① 회음부에 따뜻한 물을 붓거나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도록 한다.
 - ② 감염 위험이 크므로 정상 배뇨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인공도뇨를 시행한다.
 - ③ 배뇨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하루에 1,200~1,500mL 정도의 수분섭취가 필요하다.
 - ④ 필요 시 복압이나 방광 위의 외부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골부위를 손으로 누르거나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한다.
 - ⑤ 요의를 느끼면 소변을 보도록 돕는다. 배뇨를 지연시키면 배뇨 시작이 어려워지고 요의가 사라질 수 있다. 평소 배뇨하는 시간에 소변을 보도록 한다.

문45. [정답] ②

- 바륨관장은 황산바륨을 직장으로 주입한 후 X선 촬영을 시행하는 검사법으로, 하부위장관의 모양과 운동성을 검사한다.
- 검사 전 간호
 - 검사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는다.
 - 검사 전 저잔류식을 제공하고, 검사 전날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섭취를 증가시킨다.
 -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하며, 관장을 시행한다.
 - 검사 후 간호
 -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섭취를 권장한다.
 - 바륨으로 인해 대변색이 옅어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 바륨으로 인한 분변매복을 예방하기 위해 변비약을 처방한다.
 - 장 준비와 검사로 인해 대상자가 지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쉬도록 격려한다.

문46. [정답] ⑤

- 해당 문제는 배변훈련 프로그램 시행 후 결과에 대한 문항이다.
- ① 하루 2,500~3,000mL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가장 바람직한 음료는 염분, 카페인, 칼로리가 없는 물이다.
 - ② 평소 배변 직전에 따뜻한 음료를 마신다.
 - ③ 부드러운 배변을 위해 변비약을 상시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변비약은 장기적으로 장기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교육하도록 한다.
 - ④ 배변 충동을 느낄 때는 참지 말고 화장실을 이용한다. 배변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변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⑤ 배변 시 앞으로 웅크리고 앉는 자세는 배변을 촉진시키며, 복부를 손으로 누르는 행동은 배변을 자극한다.

문47. [정답] ②

- 오랫동안 누워 있던 대상자는 걷는 훈련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침상안정 후 처음 시도하는 보행에 동행하여 대상자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 대상자가 침상가에 잠시 앉은 후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잠시 멈춘 후 보행할 수 있도록 선 자세에서 대상자를 지지한다. 이는 오랫동안 침상안정을 했던 대상자가 일어설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립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어지럼이나 허약감이 나타나 넘어질 수 있으므로,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걷는 거리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 필요에 따라 간호사와 대상자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벨트를 적용한다.
- 침상안정에서 보행을 시작할 때, 현기증이 60초 이상 지속되거나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3분 이내에 수축기압이 20mmHg 이상 떨어지면 기립저혈압으로 간주하므로, 대상자를 다시 침대에 눕게 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문 48. [정답] ①

- ① 스타킹은 최소한 8시간마다 30분 동안 벗겨준다. 다리의 혈액 순환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스타킹이 너무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② 스타킹의 주름과 멍침은 피부손상과 순환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접힌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펴준다.
- ③ 대상자에게 다리를 꼬거나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다리 마사지나 다리가 조이는 옷을 피하도록 교육한다.
- ④ 무릎길이의 스타킹은 발뒤꿈치부터 무릎 뒤까지 길이를 측정한다.
- ⑤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기 전, 15~20분 동안 다리를 상승시키거나 누워있게 하여 부종이 초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자가 앉아 있었거나 걷고 있었다면 최소 15분 동안 발과 다리를 상승시킨다. 이는 다리 혈관이 혈액으로 윤휴되어 스타킹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문 49. [정답] ③

- 대상자는 공복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므로, 야식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음식을 제공한다. 단백질 식품(예: 우유, 치즈) 및 가벼운 탄수화물 식품(예: 크래커, 토스트)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 고단백질 식품(예: 육류)은 뇌를 각성시키는 타이로신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든 음료나 알코올도 수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문 50. [정답] ④

발열의 과정은 오한기, 발열기, 해열기의 3단계로 구분된다. 발열기(고온기)는 말초체온이 시상하부의 체온조절기에 의해 새로 상향조정된 기준점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혈관 확장으로 인해 피부가 따뜻하고 상기되며, 대상자는 춥거나 답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된다. 발열기가 장기간 지속되면 호흡의 증가로 인해 수분이 소실되어 갈증을 느낄 수 있으며, 단백질 대사의 증가로 인해 피로, 허약, 근육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섬망이나 열성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다.

- ① 땀이 많이 난다. - 해열기의 증상
- ② 떨림이 나타난다. - 오한기의 증상
- ③ 추위를 호소한다. - 오한기의 증상
- ④ 갈증을 호소한다. - 발열기의 증상
- ⑤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 오한기의 증상

문 51. [정답] ④

미온수 스펀지 목욕은 27~34℃ 정도의 미온수에 수건을 적셔 10~30분 동안 몸을 닦아주는 방법이다. 얼굴, 팔, 다리, 엉덩이를 닦고 가슴과 복부는 일반적으로 닦지 않는다. 문지르면서 닦으면 열 생산을 초래하므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는다. 체표면과 혈류 간의 대류 기전을 통해 체표면에서는 증발 기전에 따라 열이 손실된다. 따라서 40℃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청색증과 떨림, 빈맥이 발생하면 즉시 목욕을 중단한다.

문 52. [정답] ①

간호사는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후관리(사체관리)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사체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이도록 한다.

- ① 팔약근 이완으로 인해 대변이나 소변이 배설되므로 엉덩이 밑에는 흡수용 패드를 놓아둔다.
- ② 혈액이 얼굴 부위에 고여 변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와 어깨에 베개를 받쳐준다.
- ③ 수건을 말아 턱 밑에 받쳐주어 입이 다물어지게 한다.
- ④ 체위는 바로누운자세(앙와위)에서 팔은 양 옆에 붙이고 손바닥은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배 위에 얹어 놓는다.
- ⑤ 의치를 한 경우,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을 위해 일반적으로 의치를 끼운 상태에서 입이 다물어지게 한다.

문 53. [정답] ④

노인의 낙상 예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 ① 욕실, 주방, 화장실 등의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은 낙상 예방 활동이다.
- ② 욕실의 경우, 변기와 욕조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③ 눈부심이 없는 전구를 사용하여 계단과 복도의 밝기를 조절한다.
- ④ 모든 카펫, 매트, 타일은 안전해야 하며, 깔개 뒷부분에는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⑤ 침상 옆 탁자와 침상 위 탁자는 대상자 가까이에 배치하고,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필요한 물건을 둔다.

문54. [정답] ①

노인의 낙상 예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 ① 주변 시야의 감퇴로 인해 계단 벽 쪽의 물건을 보지 못해 물건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계단 벽의 돌출된 물건은 치운다.
- ② 신발은 꼭 맞는 것을 선택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 ③ 전기코드는 벽에 부착하여 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 ④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둔다.
- ⑤ 미끄럼방지 난간을 설치할 때는 벽에서 5cm 가량 띄워서 설치하여 난간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문55. [정답] ⑤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 주된 증상, 과거력, 투약력,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방법, 신체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문56. [정답] ①

미생물은 저장소에서 성장하고 증식하며, 습한 드레싱은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에 이상적인 환경이 된다.

문57. [정답] ①

의료관련감염은 적절한 손위생 방법, 환경관리, 무균술 적용, 감염 위험성을 가진 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손 씻기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중요 방법으로, 손의 오염물질 및 일시균을 제거하고 미생물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장갑 착용은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으며, 손을 씻은 후에 보호자와의 접촉, 재활용 물품 세척 및 소독, 간호기록 등을 할 수 있다.

문58. [정답] ④

피부가 찢어진 개방상처는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하여 멸균된 물품으로 관리한다.

- ① 물이 튄 경우, 비멸균이다.
- ② 멸균물품은 포장이 찢어지지 않고 견고해야 한다.
- ③ 멸균물품이나 멸균영역을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는다.
- ④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물품으로 준비한다.

문59. [정답] ④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는 피내주사 방법으로 시행한다.

- ① 피내주사 용량은 0.05mL를 주입하여 낭포 지름이 5~6mm가 되도록 주사한다. 주사 용량은 연령이나 대상자에 따라 다르므로 낭포 지름의 크기가 중요하다.
- ② 피내주사는 표피 아래 진피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다. 피내주사 부위는 아래팔의 내측, 가슴 상부, 등 상부, 어깨뼈 하부이다.
- ③ 약물의 피부반응검사는 10~15분 후에 판독한다.
- ④ 삽입 시 주사바늘의 각도는 5~15°를 유지한다.
- ⑤ 주사 후 마사지하지 않도록 한다.

문60. [정답] ①

둔부의 배면부위에서 주사 부위를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전자와 후상장골극을 연결한 사선의 상외측
 - 장골능에서 5cm 아래
 - 둔부를 4등분한 상외측 부위
- 둔부의 배면부위는 좌골신경이 근처에 있어 손상을 입을 경우 통증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 마비가 초래될 수 있다.

문61. [정답] ④

- ① 다리정맥은 피한다. 정맥울혈, 색전, 혈전정맥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장기간 주입 시 정중주와정맥은 피한다. 이는 장기간 동안 대상자가 팔을 구부리는 것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③ 손등 표재정맥은 성인에게는 적합하나 노인에게는 터지기 쉬워 적합하지 않다.
- ④ 동정맥셋길을 시행한 사지나 시행 예정인 부위는 피하도록 한다.
- ⑤ 처음 정맥천자를 수행할 때는 팔의 먼 쪽(원위부)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쪽(근위부)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62. [정답] ②

- ① 잦은 드레싱 교환은 감염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드레싱 교환주기는 멸균투명드레싱의 경우 적어도 5~7일마다, 멸균거즈드레싱의 경우 적어도 2일마다 교환한다.
- ② 중심정맥관에 주사기나 수액세트를 연결하기 전에는 중심정맥관의 잠금장치를 항상 잠그고 연결하여 감염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 ③ 멸균장갑 착용 후 중심정맥관의 주입구 연결부위를 소독한 후, 마개를 열고 생리식염수가 든 주사기를 연결하여 주사기의 내관을 당겨 혈액 역류를 확인하고, 천천히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다음 준비한 수액세트를 연결한다.
- ④ 약물주입 시 3-way 사용은 감염 위험성이 커서 권장되지 않는다. 만일 3-way를 사용해야 한다면, 주입구에 멸균캡을 부착하여 폐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⑤ 중심정맥관을 통한 혈액 채취 시 마개를 알코올 솜으로 닦고 건조시킨 후, 주사기를 마개 중앙에 삽입하고 카테터의 잠금장치를 열어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한 양의 혈액을 흡인해서 버린다. 혈액오염과 혈액응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흡인한 혈액은 다시 주입하지 않는다.

문 63. [정답] ⑤

- ① 약물투여 후 5~10분간 바로누운자세를 유지하고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 ② 코점막의 손상이나 점적기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점적기가 코점막에 닿지 않게 한다.
- ③ 약물준비 시 점적기에 남은 양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이는 약병의 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④ 코안 점적 시에는 내과적 무균법을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한다. 점적할 용액은 분무기를 사용하여 코점막에 연무할 수도 있다.
- ⑤ 나비굴(점형동) 부위는 바로누운자세로 눕도록 한 후, 베개를 어깨 밑에 넣어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다.

문 64. [정답] ⑤

- ①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간에 교환하도록 계획한다.
- ② 취약한 대상자의 경우, 가운에 미생물 전파 위험성이 없는 한 멸균가운을 착용할 필요는 없다.
- ③ 적절한 정도의 지지, 부동, 드레싱의 고정을 위해 압박 정도로 감아야 하나 혈액순환을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상처 간호 시 두 별의 무균장갑을 준비한다. 오염된 드레싱 제거와 새 드레싱 적용 사이에 바꾸어 착용하며, 장갑 착용 전후에 손 씻기를 한다.
- ⑤ 상처간호로 대상자가 불편해한다면, 드레싱을 교환하기 30~45분 전에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한다.

문 65. [정답] ⑤

- ① 실버 드레싱은 은이온이 함유된 흡수성 항균드레싱으로 감염된 상처에 사용된다.
- ② 하이드로젤 드레싱은 비접착성 젤리 같은 시트로 습한 환경을 유지하여 산소통과가 가능하나, 젖무름이 있어 드레싱 교체를 자주 해주어야 한다.
- ③ 칼슘알지네이트 드레싱은 비접착성 드레싱으로 흡수력이 뛰어나 다량의 삼출물이 있거나 감염된 상처에 사용된다.
- ④ 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은 흡수력이 뛰어나 상처 주위조직 침윤을 최소화시키며, 삼출물이 많거나 감염된 상처에 사용된다.
- ⑤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청결한 2단계 욕창과 감염이 없는 3단계 욕창에 사용된다.

3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66~85번) 해설

문 66. [정답] ②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 67. [정답] 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상태, 치료 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 마.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 자. 삭제 <2013.10.4>

-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 3. 간호기록부
 -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다. 투약에 관한 사항
 -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바. 간호 일시(日時)

문 68. [정답] ②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3항〉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문 69. [정답] ①

〈의료법 제30조(협조 의무) 제2항〉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70. [정답] 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7. 2. 3.)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문71. [정답] ③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문72. [정답] ③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정기 건강진단)〉

제3조(정기 건강진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별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사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문73. [정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문 74. [정답] ①

〈감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 75. [정답] 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검진) 제1항~제3항〉

-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검진대상자) 제2항〉

- 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문 76. [정답]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가입자의 종류)〉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문 77. [정답]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삭제 <2020. 4. 7.>
 -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3. 제6조제2항제2호(「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문 78. [정답] ②

〈지역보건법 제16조(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문 79. [정답]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보건소의 추가 설치) 제1항〉

-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80. [정답]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2.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3.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문 81. [정답]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1항〉

-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문 82. [정답] ④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문 83. [정답]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제2항〉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시하여 광고할 것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별표 1] 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금지

문 84. [정답] 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망
2.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3. 입원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4. 바이러스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5. 의료기관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문 85. [정답] ③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